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17 발의연월일: 2021. 3. 16.

발 의 자:김승원·양정숙·이병훈

양경숙 • 이상헌 • 김종민

임호선 · 이규민 · 정찬민

유정주 · 김진표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의 325개소 대중골프장 중 37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업자가 운영하는 병설 대중골프장임. 현행 법은 회원제 골프장업자에게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제 골프 장과 분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은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하여 체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교습행위를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이용해 편법으로 회원 권을 과도하게 분양하는 등 기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피해가 발 생함에도 그 한계를 규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 정임.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실내 체육시설 폐쇄 및

해외여행 곤란 등에 따라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가 급증하면서 대중 골프장업의 경우에도 본래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이용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회원(또는 유사회원)을 편법으로 모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 회원의 요건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금액 이상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 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대중골프장의 건 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제5호,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금액 이상으로 지불하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을 우선적으로 받기로"로 하고, 같은 조제5호 중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약정한 자를 말한다"를 "이용료를 지불하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을 받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중골프장(제1항의 병설 대중골프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의 예약 순서대로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

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 ③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행위
- 2.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3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를 위반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4. ----- 1년 이상의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 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 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 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 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 료"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 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 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금액 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 이상으로 지불하고 체육시설 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업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을 우선적 으로 받기로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 5.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 ----- 이용료를 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 지불하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이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용한 교습을 받기로 체육시설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 업자와 약정한 사람으로서 회

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①
(생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대중골프장(제1항의 병설

<신 설>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 저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 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 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대중골프장(제1항의 병설
 대중골프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의 예약 순서대로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
 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
 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 ③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2.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세30조(시정명령)	

- 1. ~ 4. (생 략)
- 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 6. ~ 8.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u>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u> <u>5.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u> 른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를 위 <u>반한 때</u>
 - 6. ~ 8. (현행과 같음)